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99호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 령 제 4 3 6 호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발령 기 획 예 산 과 2

공 고

○ 공 고 제 1488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과 6
○ 공 고 제 1499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체육진흥과 14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훈 령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8월 11일

남동구 훈령 제436호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확인평가)”를 “(용역결과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겨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용역 평가결과서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주무관					
기간		계약방법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수행방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주요 연구결과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1. 집행상황 점검	● 계약기간 준수 여부						
	●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여부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등)						
	● 예산 집행의 적정성						
2. 결과의 평가	● 추진 방법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연구결과의 독창성						
	● 정책 반영 가능성 및 활용도						
3. 결과의 공개	● 행정자료실 비치·보존 여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구 홈페이지 등록 여부						
평가자	○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주무관(소속 및 성명)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등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 결과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오탈자 정비
: (안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신설 : (안 제11조제3~5항)
- 용역 평가결과서 신설 : (안 별지 제4호서식)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88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0.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6.08.11. ~ 2026.08.25.(15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대상 : 이륜차 26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대상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6-0007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417-2 (파라다이스 아파트 담벼락)	2026-04-14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6-00072	번호판 없음	삼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1143-17	2026-04-09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6-0007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279(형진프라자주차장 입구쪽)	2026-04-10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6-0007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1484 (구월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남아파트 사이 열병행길 중간지점)	2026-04-13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6-0010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고잔동 658번지 108블럭 1롯데창농대로448번길150)	2026-05-18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6-0010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능허대로 747 금정정밀과 프레시타운 사이 전산주 앞 이면도로	2026-05-12	(주)인천폐차사업소	
7	2026-0014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동 109-241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6-00145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592-12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9	2026-0014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715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0	2026-00148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12-8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1	2026-0014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111-60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2	2026-0015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616-29 새마을금고 앞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3	2026-00077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능허대로625번길 140-4 전봇대 앞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폐차	
14	2026-00078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대로692번길 13-7 골드맨션 앞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폐차	
15	2026-0008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수동 724-3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폐차	
16	2026-0008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서로2번길 26 한화파크빌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폐차	
17	2026-0008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4-22	주식회사 한신폐차	
18	2026-0008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4-22	주식회사 한신폐차	
19	2026-0008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2주차장)	2026-04-22	주식회사 한신폐차	
20	2026-0011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남로355번길 61-12 석나하이츠	2026-06-02	주식회사 한신폐차	
21	2026-0012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고개로12(상가 뒤쪽 주차장)	2026-06-02	주식회사 한신폐차	
22	2026-0012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941(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6-01	주식회사 한신폐차	
23	2026-0012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941(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6-01	주식회사 한신폐차	
24	2026-0012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남로355번길 35	2026-06-02	주식회사 한신폐차	
25	2026-0015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811-5	2026-07-14	주식회사 한신폐차	
26	2026-0015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109-176 쓰레기분리수거장 옆	2026-07-13	주식회사 한신폐차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6-0007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30 ○ 견인일 : 2026-04-1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417-2(파라다이스 아파트 담벼락)
	2026-0007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08 ○ 견인일 : 2026-04-0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1143-17
	2026-0007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12 ○ 견인일 : 2026-04-1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279(형진프라자주차장 입구쪽)
	2026-000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26 ○ 견인일 : 2026-04-13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1484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남아파트 사이 일방통행길 중간지점)
	2026-0010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13 ○ 견인일 : 2026-05-1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고잔동 658번지 108블럭 1롯데(청능대로 448번길150)

관 리 번 호	2026-0010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20 ○ 견인일 : 2026-05-1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능허대로 747 금강정밀과 프레시타운 사이 전신주 앞 이면도로
	2026-0014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24 ○ 견인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 109-241
	2026-0014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24 ○ 견인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592-12
	2026-0014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19 ○ 견인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715
	2026-001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18 ○ 견인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612-8

관 리 변 화	2026-0014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29 ○ 견인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111-60
	2026-001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22 ○ 견인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616-29 새마을금고 앞
	2026-0007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12 ○ 견인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편차 ○ 방치장소 : 능허대로625번길 140-4 전봇대 앞
	2026-0007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23 ○ 견인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편차 ○ 방치장소 : 남동대로692번길 13-7 골드맨션 앞
	2026-0008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19 ○ 견인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편차 ○ 방치장소 : 장수동 724-3

관 리 번 호	2026-000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4 ○ 견인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소래역서로2번길 26 한화파크빌
	2026-0008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2 ○ 견인일 : 2026-04-2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008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2 ○ 견인일 : 2026-04-2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008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2 ○ 견인일 : 2026-04-2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2주차장)
	2026-001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10-20 ○ 견인일 : 2026-06-0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구월남로355번길 61-12 석나하이츠

관 리 번 호	2026-00120	 2026. 8. 11. 오후 2:14:51 임신영(가)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13 ○ 견 인 일 : 2026-06-0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논고개로12(상가 뒤쪽 주차장)
	2026-00121	 2026. 8. 20. 오후 1:45:5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20 ○ 견 인 일 : 2026-06-01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간석동 941(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0122	 2026. 8. 20. 오후 1:45:4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20 ○ 견 인 일 : 2026-06-01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간석동 941(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0123	 2026. 4. 30. 오후 7:08:00 김현영(가)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30 ○ 견 인 일 : 2026-06-0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구월남로355번길 35
	2026-00151	 2026. 4. 22. 오후 2:52:51 김현영(가)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22 ○ 견 인 일 : 2026-07-14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구월동 811-5

관 리 번 호	2026-0015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27 ○ 견 인 일 : 2026-07-13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논현동 109-176 쓰레기분리수거장 옆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99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11.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허가 및 이용료 감면 규정,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 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
- 체육시설 전용이용 허가 신청기한 조정 (안 제5조제2항)
- 예약현황 공개 및 이용기준 마련 (안 제5조제5항 및 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제9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
- 선량한 풍속 저해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근거 마련 (안 제12조)
- 위탁 철회 사유 정비 (안 제18조)
- 서창어울마당 시설명 변경 (별표 1)
- 국민체육센터 교습비 및 이용료 기준 정비 (별표 3)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11. ~ 2026. 8. 3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체육진흥과 / ☎ 453-6272,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참고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허가 및 이용료 감면 규정,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 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
- 체육시설 전용이용 허가 신청기한 조정 (안 제5조제2항)
- 예약현황 공개 및 이용기준 마련 (안 제5조제5항 및 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제9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
- 선량한 풍속 저해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 근거 마련 (안 제12조)
- 위탁 철회 사유 정비 (안 제18조)
- 서창어울마당 시설명 변경 (별표 1)
- 국민체육센터 교습비 및 이용료 기준 정비 (별표 3)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 또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특정 동호인 단체 등의 장기간 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이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 및 특정 시간대에 한정하여 우선 사용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5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자 또는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조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수탁자”를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종류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기준	평일	공휴일	기준	평일	공휴일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국제규격 인조잔디 축구장 + 관람석)	2시간	70,000	100,000	2시간	112,000	16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게임당 1회 2시간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주간(9시간)	448,000	640,000	
구월체육시설 축구장 (비국제규격 인조잔디 축구장)	2시간	50,000	75,000	2시간	80,000	120,000	*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훈련의 경우 체육경기 이용료 적용
				주간(9시간)	320,000	480,000	
주적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어린이 야구장)	2시간	50,000	75,000	2시간	80,000	120,000	*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의 전체이용을 위 하여 별지 제1호의 허가신청서로 전용 이용 시 육상경기장 과 관람석이 함께 이 용 허 가 됨
				주간(9시간)	320,000	480,000	
남동어울림 체육관	2시간	84,000	126,000	2시간	134,000	201,000	* 남동근린공원 축구장을 운 동 경 기 를 위 해 예약시스템으로 전용 이용 시 관람석은 다 른 이 용 자 들 과 공 유 해 야 함
				주간(9시간)	536,000	804,000	
남동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시간	84,000	126,000	2시간	134,000	201,000	* 남동근린공원 축구장을 운 동 경 기 를 위 해 예약시스템으로 전용 이용 시 관람석은 다 른 이 용 자 들 과 공 유 해 야 함
				주간(9시간)	536,000	804,000	
남동2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시간	84,000	126,000	2시간	134,000	201,000	* 어린이 야구장은 청소년 및 성인의 경기 등 금지
				주간(9시간)	536,000	804,000	
서창어울마당 체육관	2시간	42,000	63,000	2시간	67,000	100,000	* 부대시설 이용 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 부과 징수
				주간(9시간)	268,000	400,000	
서창어울마당 인조잔디구장	2시간	20,000	30,000	2시간	32,000	48,000	* 부대시설 이용 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 부과 징수
				주간(9시간)	128,000	192,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국민체육센터 교습비 및 이용료(제8조 관련)

○ 적용대상 : 남동국민체육센터 · 남동수영장 · 남동2국민체육센터 · 서창어울마당 (단위 : 원)

구분		이용료		이용료		교습비	비 고
		기본(1일1회)	월 회 원		월 회 원		
수영장 프로그램 교습비 및 이용료	어린이	2,000	30,000	(주2회) 40,000 (주3회) 44,000 (주5회) 50,000		- 월회원이자 함은 자유수영을 1개월 단위 정해진 시간에 이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교습회원이라 함은 주단위로 운영하는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 기본(1일 1회) 이용시간은 수영 가능시간 1회 1시간 포함 총 2 시간으로 한정한다.	
	청소년	3,000	40,000	(주2회) 56,000 (주3회) 60,000 (주5회) 86,000			
	성인	4,000	46,000	(주2회) 56,000 (주3회) 60,000 (주5회) 86,000			
헬스장 프로그램 교습비 및 이용료	청소년	2,000		(주6회) 34,000		- 교습회원이라 함은 주 6일 운영 하는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 한다. - 기본(1일 1회) 이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한정한다.	
	성인	3,000		(주6회) 44,000			
단체운동실 프로그램 교습비	어린이	(주2회) 40,000 (주3회) 44,000				- 교습회원이라 함은 주단위로 운영하는 1개월 단위 수강자 를 말한다.	
	청소년 성인	(주2회) 44,000 (주3회) 48,000 (주5회) 48,000					
체육관 프로그램 교습비	어린이	(주2회) 40,000 (주3회) 44,000				- 교습회원이라 함은 주단위로 운영하는 1개월 단위 수강자 를 말한다.	
	청소년 성인	(주2회) 44,000 (주3회) 44,000 (주5회) 48,000					
체육관 이용료	농구, 등 탁구 등 체육활동	청소년	1,400			- 기본(1일 1회) 이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한정한다. - 남동2국민체육센터	
		성인	2,000				
단체운동실	댄스 등 체육활동	전용이용	7,000			- 2시간 사용 기준 - 서창어울마당	
프로그램실	체육교육 등	전용이용	20,000			- 2시간 사용 기준 - 남동2국민체육센터	
비 고	1. 이용료 등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 이용시간 초과 이용 시 2. 이용료 등 할인(청소년, 어린이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 6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③ 20퍼센트 할인 -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이용 고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그 자녀 3. 수탁자는 위 기준 이외의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위 기준을 준용하여 교습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무료 생활프로그램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이용 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
제5조(이용 허가)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전용이용 허가 신청서를 이용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이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u> ③·④ (생략) ⑤ <u>구청장은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수탁기관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u>	제5조(이용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구청장은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 또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u>

⑥ (생 략)

<신 설>

제6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생 략)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와 교습비를 50퍼센트 범
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13. (생 략)

<신 설>

<신 설>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은 특정 동호인 단체
등의 장기간 독점 사용을 방지
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
이 사용 가능하도록 이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 및
특정 시간대에 한정하여 우선
사용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현
행 제1항과 같음)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⑥·⑦ (생략)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허가와 전용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용자의 이용제한, 프로그램 교습 중단,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 5.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8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

장기복무 제대군인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허가의 취소) ① -----

-----.

1. -----
----- 자 또는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
는 자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조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철회) ① -----

택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 3. (생략)

② (생략)

-----.

1.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